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안 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둔.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국립영천호국원·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국립산청호국원·국립괴산호국원·국립제주호국원·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둔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국가보훈부

제3조(직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보훈정책실·보상정책국·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보훈단체협력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점검 및 평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 내 각종 기획의 종합·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기금운용계획의 종합·조정
4.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5. 행정관리·사무관리·정보공개 관련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조정
6. 부 내 정부혁신과 관련된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1.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2.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개발

14.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5.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1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및 반부패·청렴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4. 감사통계의 유지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6.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의 관리

7.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상훈·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접수·발송·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6. 국가보훈부 소관 기록관의 운영·관리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안전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보훈정책실) ① 보훈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보훈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보훈정책의 분석 및 성과의 점검·확인
4. 보훈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조정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관리
6.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추진업무의 총괄·조정
7.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수집 및 분석
8.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연구 및 기구의 설치
9.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10.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11.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 및 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3.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훈의식 고취 및 보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4. 보훈문화 조성과 관련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5.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총괄·조정

16. 국가유공자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1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18. 보훈행사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19.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20. 독립·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21. 각종 기념행사 및 보훈기념일과 관련된 특별사업 등의 기획·시행

22.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23. 현충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4. 현충시설의 건립 및 건립 지원

25.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의 총괄·조정

26. 해외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및 보존

27.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2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감독

29.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30.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3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32.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33. 국립묘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34.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감독
35.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국가관리묘역에 관한 사항
36.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37. 국가유공자 등의 발굴 관련 기획 및 사업의 총괄·조정
38. 국가유공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39.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조사 및 포상기록의 보존·관리
40.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41. 독립·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헌의 발간·보급 및 지원

제12조(보상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의 결정
3.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이등급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보상의 정지에 관한 사항
8.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시행
9.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유지
10. 신규 보훈대상자로의 등록 요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12. 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개선

제13조(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보훈복지사업의 총괄·조정
3.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4.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양로·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및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8. 보훈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재정건전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및 재활에 관한 연구·개발

10. 보훈병원의 운영·관리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학관리,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대군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제대군인 지원 대상범위 및 수준의 결정
3. 제대군인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4.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적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관리
6. 제대군인 등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취업·창업 등 지원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의료·대부·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국내 참전 제대군인과 관련된 기념행사계획의 수립·시행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11.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제16조(직무) 국립대전현충원·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국립영천호국원·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국립산청호국원·국립괴산호국원·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선양
2. 의전·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기념관·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6. 그 밖에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관리소의 장) ① 관리소 중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밖의 관리소에 소장 또는 원장 각 1명을 두며,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5급으로,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국립산청호국원·국립괴산호국원 및 국립제주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② 관리소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국립영천호국원·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9조(직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

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관장)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22조(직무)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접수·발송, 예산·회계 및 결산, 소속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운영 지원
3.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선양·예우 및 보훈문화에 관한 사항
5.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장애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2.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1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수행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를 제외한다)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17.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8.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9.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②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제23조(명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보훈청장은 관리소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통제할 수 있는 관리소의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보훈청장) ① 지방보훈청에 청장을 1명을 두며, 청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보훈지청장) ① 보훈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제27조(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0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접수·발송,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 보훈심사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4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한시정원

제35조(한시정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②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4항제4호, 제6조제5항, 제6조제6항 전단, 제6조제7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2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3항제2호, 제12조의3제5항,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6항제1호, 제2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전단,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전단, 제25조제4항제3호, 제25조제5항, 제27조제3항제5호,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후단, 제31조의2제2항, 제31조의3제1항제2호, 제31조의3제2항 전단, 제31조의3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 제33조제3항 후단,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제45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 전단, 제49조제3항 단서, 제50조제1항제3호, 제50조의2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6조, 제57조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제59조의3,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의3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5항, 제21조제6항제4호,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제36조의2제1항제4호, 제36조의2제2항, 제37조, 제39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4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3조의2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뒤쪽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⑥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23호·제29호·제31호·제32호·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보훈부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⑦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9조의6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10조의5제1항제4호 및 제10조의5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6제1항,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3항 및 제4항, 제9조의9,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제10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

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보훈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 ⑪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⑫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제17호 및 제79조제1항제9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⑭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 ⑮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⑯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⑰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장관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후단,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3제4항, 제27조의3제1항 본문, 제27조의3제5항 및 제6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 제34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5항, 제51조제6항제4호, 제61조의3제2항,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제63조의2제2항 본문, 제64조제1항, 제64조제5항 본문, 제64조제6항, 제64조의2제3항, 제64조의3, 제67조의2제1항제4호, 제67조의2제2항, 제69조제1항 및 제3항, 제71조제1항,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3조, 제84조

의3제2항, 제101조의2제1항 및 제101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본문, 제13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본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제3항 및 제4항, 제25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3제1항 본문, 제27조의3제3항 및 제5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호, 제29조제2항,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3조,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제2호나목,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2제2항제1호, 제42조의2제3항, 제42조의3제3항제2호, 제42조의3제5항 및 제6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9조,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4항, 제51조제6항제1호, 제5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제52조,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3항 전단, 제55조제4항

제3호, 제55조제5항, 제58조제3항제5호, 제61조의2, 제61조의3제1항 후단, 제61조의3제2항, 제61조의4제1항제2호, 제61조의4제2항 전단, 제61조의4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4항제2호 후단, 제64조제5항 본문,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제64조의2제3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2제2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1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4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2조제1항 전단, 제82조제3항 단서,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제3호, 제84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 제88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88조의5, 제9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전단,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제96조, 제97조제2항, 제97조의2, 제99조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 전단, 제101조제2항, 제10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1조의5제4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2조의3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6제2항 및 제101조의5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표 3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의3, 별표 9의2, 별표 11 및 별지 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⑲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⑳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4제1항, 제2조의6제4항, 제4조,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조의4제1항·제2항,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7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2

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㉑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㉒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가)·나) 외의 부분 및 제3호라목7)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㉓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차관

㉔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그 부처의”를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의”로 한다.

㉕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㉖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㉗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㉙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㉚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㉛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의4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 제39조의3,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구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 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 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㉖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㉗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6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㉙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호,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 ㉚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2조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5항, 제48조제4항제3호, 제58조제2항, 제6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2제1항제4호, 제66조의2제2항, 제67조, 제69조제1항 및 제3항, 제71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

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호, 제25조제2항,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2항제2호나목,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9조제1항,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제3항, 제40조제3항제2호, 제40조제5항 및 제6항, 제41조제4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3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52조제4항제3호, 제52조제5항, 제53조제2항제5호, 제57조, 제58조제1항 후단,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제59조제2항 전단, 제59조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1조제3항 후단, 제61조제4항 및 제5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2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1항 후단,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전단, 제78조제3항 단서,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제2항, 제81조제1항 전단, 제81조제2항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3조의2, 제85조제2항 및 제3항, 제86조제1항 전단, 제86조제2항,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0조제4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2항, 제91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부

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④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나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④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0호의2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⑥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④⑦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자목부터 파목까지 및 제59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가보훈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4 자료집중기관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④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⑤⑩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10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⑤⑪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⑤⑫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⑤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

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⑤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5조 및 제5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⑤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⑤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⑤7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⑤8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⑤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로 한다.

- ⑥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 ⑥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처·법제처”를 “법제처”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2조의3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⑥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⑥3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⑥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2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0조의4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4항, 제23조제1항 및 제6항, 제2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23조의3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2조제3항, 제2조의2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본문, 제19조의2제4항 및 제7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호 및 제6호,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0조의6제2항, 제20조의7제1항 전단, 제20조의7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가목,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4항,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 본문, 제29조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및 제34조의3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㉞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6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㉞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㉞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㉞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보훈부

㉞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㉞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다.

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㉒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로,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를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로 한다.

㉓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제7호나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전단,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단서,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 제9조제6항 전단, 제9조제7항, 제10조의2,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6제1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7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제4항제2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4호,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6제2항, 제10조의8제1항제4호, 제10조의8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㉖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㉗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5항, 제21조의2제4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5조의2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1항제4호, 제38조의2제2항, 제39조,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3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5항 전단,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제2호, 제16조의3제5항, 제17조제3항 단서,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1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4조제4항제3호, 제24조제5항, 제26조, 제27조제3항제5호,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의2제2항 전단, 제31조의2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 본문,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전단, 제52조제3항 단서, 제53조, 제54조 전단, 제55조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6조, 제57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9조의3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62조,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2항 본문,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의3,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의3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제4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

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㉔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호사목, 같은 조 제2호바목,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1항 관련)

1. 지방보훈청

명 칭	위 치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2. 보훈지청

지방보훈청	소속 보훈지청의 명칭	보훈지청의 위치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도 용인시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도 춘천시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도 강릉시
부산지방보훈청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경남동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서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대전지방보훈청	충남서부보훈지청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동부보훈지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북남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충주시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
광주지방보훈청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익산시

[별표 2]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총계	337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4급 상당	1
일반직 계	333
고위공무원단	11
3급 또는 4급 이하	320
전문경력관	2

[별표 3]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총계	1,103
일반직 계	1,103
고위공무원단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
3급 또는 4급 이하	1,075
전문경력관	16

[별표 4]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제1항 관련)

1. 국가보훈부

조직	정원
보훈정책실 3개 과	13명
보상정책국 1개 과	5명

2.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개 과	14명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5조 관련)

제3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6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7급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